

제 1667 호(그2)
1992. 7. 10

발행인: 서울특별시청 이 상 배
편집인: 공 보 관 이 상 진
전 화: 791-8111~3
인 쇄: 한국립류화산업(인쇄)주식회사
전 화: 278-8111~3

시 보

차 레

- 규 칙
 - 제 2482 호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규칙등개정규칙 2
 - 제 2483 호 서울특별시사무분장규칙등개정규칙 2

공																			
발																			

1. 시 보취임을 받드시 읽어야 한다.
2.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서울특별시

“정부가 행정경계 뛰어서 다시잡자”

규 칙

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규칙중개정규칙
을 이에 공포한다.

1992. 7. 10

서울특별시장 이상배 ㉔

●서울특별시규칙제2482호

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규칙중
개정규칙

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규칙 중 다음과
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 중 다음과 같이 한다.

총계 정원 1,866을 "1,871"로 하고, 5급
정원 "239"를 "240"으로, 정원내용 중 행
정직 "163"을 "162"로, "행정 또는 환경
직 1", "환경·화공 또는 보건의 2" 및
"환경 또는 화공직 1"을 신설하고 "화공
또는 보건의 2"를 삭제한다.

6급정원 "445"을 "448"로 하고, 정원내용
중 "환경직 2"를 신설한다.

7급정원 "544"를 "546"으로 하고 정원내
용 중 보건의 "6"을 "8"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을 이
에 공포한다.

1992. 7. 10

서울특별시장 이상배 ㉔

●서울특별시규칙제2483호

서울특별시사무분장규칙중
개정규칙

서울특별시사무분장규칙 중 다음과 같이

개정한다.

제5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59조(환경과) ①환경과에 환경기획계·
수질보전계·대기보전계 및 생활공해계를
두며, 환경기획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
는 지방환경기좌로, 수질보전계장 및 대
기보전계장은 지방보건의과·지방화공기
과 또는 지방환경기좌로, 생활공해계장은
지방화공기과 및 지방환경기좌로 보한다.
②환경과의 계별 준장사무는 다음과 같
다.

1. 환경기획계

- 가.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
- 나.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항
- 다. 환경개선비용부담금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사항
- 라. 환경보전 대시민홍보 및 교육
- 마.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운영
- 바. 파내 다른 계의 주판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

2. 수질보전계

- 가. 수질보전 종합대책
- 나. 배수배출 설치허가·행정처분 및 지도점검사항
- 다. 유해화학물질 및 토양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
- 라. 배출부과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
- 마. 청소사업본부 지도감독

3. 대기보전계

- 가. 대기보전 종합대책 수립
- 나. 대기오염 배출시설허가·행정처분 및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
- 다. 청정연료 공급지도
- 라. 연료사용규제에 관한 사항

4. 생활공해계

- 가. 생활공해(소음·진동·악취·분진) 종합대책 수립
- 나. 생활공해 배출시설 설치허가·행정처분 및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

<p>다. 자동차 공해방지대책수업 및 지도 점검에 관한 사항 라. 환경오염 피해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공해 관련 민원총괄 마. 무허가 공해업소 단속에 관한 사항 부 칙</p> <p>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	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